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2005. 06. 15 제정

2016. 07. 29 개정

2018. 06. 27 전면개정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3조 인증기관 업무	3
제4조 검증기관 지정 및 업무	3
제5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제6조 신청기관의 업무협조	4
제7조 등록시스템 운영	4
제8조 비밀유지	4
제9조 개인정보 관리	4

제 3 장 인 증 업 무

제 1 절 인증신청

제10조 인증신청	5
제11조 인증 진행에 관한 사전 협의	5
제12조 사후 인증신청	5

제 2 절 인증철회

제13조 인증철회	6
제14조 인증철회기간	6

제 3 절 정보검증

제15조 정보검증범위	6
제16조 정보검증	6
제17조 전시면적 검증	6
제18조 참가업체 수 검증	7
제19조 참관객 수 검증	8
제20조 현장검증	9
제21조 정보보고	9
제22조 정보관리	10

제 4 절 인증자격 부여

제23조 인증자격	10
제24조 인증결과 확정	10
제25조 인증서 발급	10
제26조 인증마크	11
제27조 인증결과 보고서 제작 및 발행	11

제 5 절 인증 유효기간 및 취소

제28조 인증 유효기간	11
제29조 인증 취소	11

제 6 절 이의신청

제30조 이의신청 방법과 결정	11
------------------------	----

제 4 장 인 증 심 사 비

제31조 인증심사비	12
제32조 인증심사비 환불	13
제33조 인증심사비 청구	13

부 칙	13
--------------	----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시회 참가업체 및 참관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산출을 통해 국내 전시회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전시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시회 인증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회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 라 한다)”란 인증 신청기관이 제출한 전시회의 일반정보,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에 관한 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조사·확인하여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공인하는 것을 뜻하며, 검증기준은 UFI(국제전시협회)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전시회를 뜻한다.
3.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란 「전시산업발전법」(이하 “전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 나.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10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등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 다.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0개 이상의 전시부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4. “합동전시회”란 복수의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의 전시회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공동의 전시회 명칭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5. “전시회 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6.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증 신청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인증을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기관으로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전시회 주관기관, 기타 해당 전시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 및 기관을 뜻한다.
8. “전시회 주최기관”(이하 “주최기관”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시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뜻한다.
9. “전시회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전시회 정보에 대한 검증업무를 총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뜻한다.
11. “검증기관”은 전시회 인증을 실시함에 있어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시회 정보 검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검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뜻한다.
12. “인증심의위원회”란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된 인증 결과와 이의신청 등을 최종 심사·의결하는 기구를 뜻한다.
13. “등록시스템 운영업체”란 신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시회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14. “전시회 참가업체” (이하 “참가업체” 라 한다)란 신청기관이 개최하는 전시회에 일정한 공간을 임차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진열하는 기업 및 단체를 뜻한다.
15. “참관객” 란 개최 전시회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통하여 전시장에 실제로 입장한 사람을 뜻한다.
16. “부스” 라 함은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를 진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로 1부스의 면적은 9㎡이다.
17. “참관객등록신청서” (이하 “등록신청서” 라 한다) 는 신청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시관련정보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양식으로 전시회에 입장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18. “인증마크” 란 신청기관이 제출한 전시회 정보를 통해 인증된 전시회에 대해 부여하는 표식[별표 1]을 뜻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3조 (인증기관 업무) 인증기관은 전시회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회 인증 신청업무 관리
2. 검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
3. 전시회 현장 검증(참가업체, 전시면적, 전시회 일반정보)
4. 전시회 정보에 대한 1차 검토 실시
5.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인증자격의 부여 및 관리
7. 인증정보의 관리 및 활용
8. 인증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발행
9.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시행
10. 기타 전시회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검증기관 지정 및 업무)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시회 정보 검증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UFI(국제전시협회)에 등록된 유자격의 회계법인. 단, 국내 회계법인이 제휴한 해외법인이 전술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검증업무 수행가능
2. 인증결과와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법인

②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회 정보에 대한 검증 실시
2. 인증기관에 검증실시 결과보고
3. 검증규정의 준수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진흥회는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전시산업 유관기관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른다.

제6조 (신청기관의 업무협조) ① 전시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전시회 개최 전, 중, 후에 있어서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요청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보완 기간(2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업무를 종결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비를 처리하며 인증업무 종결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이 책임을 진다.

③ 신청기관은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원활한 검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참관객 정보가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에 제공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등록시스템 운영) ① 인증을 신청한 전시회에서는 참관객 수 검증을 위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회 특성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참관객 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표 현황, 사전등록자 현황 등)가 있어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는 이 규정에 의해 인증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신청기관의 비밀 또는 자료 등을 인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신청기관에게 불이익 되도록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관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표3]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장 인 증 업 무

제 1 절 인증신청

제10조 (인증신청) ① 전시회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최소 전시회 개최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기관에 작성·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예외적인 경우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까지 인증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1. 전시회 인증신청 공문 1부
2. 전시회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최근 2회 전시회 개최 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요청 기간 내 해당 문건 및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시회 개최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현장실사 검증이 가능하다. 단, 전시회 개최 전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인증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시회 종료 후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장실사가 가능하다.

제11조 (인증 진행에 관한 사전협의) ① 인증기관, 신청기관, 검증기관은 전시회 개최 전에 등록절차와 검증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 ② 신청기관은 현장 검증에 필요한 자료(전시회 출입증, 전시회 디렉토리, 전시장 레이아웃 등)를 전시회 개최 전에 인증(검증)기관에 제출한다.

제12조 (사후 인증신청) ① 전시회가 종료된 후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정보의 검증범위)에 명시한 정보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 ② 사후 인증신청은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차년도 2월까지 가능하다.

제 2 절 인증철회

제13조 (인증철회) ① 인증신청 후 철회를 위해서는 신청기관이 진흥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관이 인증 신청 철회 후 재신청할 경우 1회까지만 허용된다.

- ③ 인증철회와 관련하여 전시회 소유권 및 인증자격 보유 등에 대한 사항은 인증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인증철회 후 타 기관에서 동일한 전시회로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기관은 인증기관에 전시회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시회 개최 이후 인증철회 할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전시회에 대해 차기 3회 동안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인증철회기한) 신청기관은 인증절차가 종료된 후 최대 1개월 이내까

지 인증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인증심사비는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절 정보검증

제15조 (정보검증범위) 전시회 정보 검증의 범위는 전시회 일반정보,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4개 부문으로 한다.

제16조 (정보검증) ① 전시회 일반정보는 현장검증 및 신청기관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② 전시면적은 임대차 계약서와 부스배치도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③ 참가업체 수는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에서 현장검증한다.

④ 참관객 수는 전시회 종료 후 검증기관에서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검증한다.

제17조 (전시면적 검증) ① 전시면적은 총전시면적과 임차면적, 특별전시면적으로 구분한다.

② 총전시면적은 다음 호와 같이 규정된다.

1. 신청기관이 전시회 개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전시시설사업자로부터 임차한 면적이다.

③ 임차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된다.

1. 신청기관과 참가업체 사이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어 참가비가 지급된 면적(유상)과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 옥내 임차면적과 옥외 임차면적으로 구분한다.

3. 국내 참가업체의 임차면적과 해외 참가업체의 임차면적으로 구분한다.

④ 신청기관이 설치한 전시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대행사 면적은 특별전시면적으로 집계한다.

제18조 (참가업체 수 검증) ① 참가업체는 신청기관과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제품(서비스)과 함께 직접 부스를 점유하여 참가한 업체를 말하

며 해당 업체는 부스 상호간판, 참가신청서, 참가업체 디렉토리, 부스배치도, 브로슈어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국적에 따라 국내 참가업체와 해외 참가업체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내 직접 참가업체는 전시회에 직접 참가한 국내업체를 말한다.
2. 국내 간접 참가업체는 공동관에 참가하는 등 전시회에 간접 참가한 국내업체를 말한다.
3. 해외 직접 참가업체는 전시회에 직접 참가한 해외업체를 말한다.
4. 해외 간접 참가업체는 해외전시회 바터 부스, 해외업체의 국내지사, 해외업체의 총판·대리점으로서 해외 브랜드를 대신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등을 의미한다.

③ 참가업체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집계한다.

1. 여러 업체가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시, 공동관을 구성하는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각각 1개 업체로 집계한다.
2. 여러 개의 부스를 1개 업체가 사용할 경우 참가업체 수는 1개사로 보며, 부스 1개를 여러 업체가 사용할 경우, 각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대 6개사로 집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참가업체 수에서 제외된다.

1. 부스를 임차하고도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
2. 전시품목과 무관한 제품을 전시하는 업체
3. 해당 전시회의 신청기관

제19조 (참관객 수 검증) ① 참관객은 전시회 입장을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거나 등록과정을 거친 입장객을 뜻하며, 등록은 하였으나 전시장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참관객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에 따라 소속기관 및 기업의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전시회를 방문한 바이어와 개인적인 관심으로 방문한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바이어는 등록신청서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소속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집계하며 국내 바이어와 해외 바이어로 구분한다.
 2. 바이어의 지역별, 업종별, 직위별 분류와 담당부서에 대한 현황 등이 포함되며, 그 분류는 전시회별 상황에 따라 신청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바이어를 제외한 참관객은 일반인으로 집계하며 국내 일반인과 해외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 ③ 참관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집계한다.
1. 등록과정을 거쳐 입장한 참관객의 작성된 등록신청서에 성명 이 외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신분증명자료 중 한 개 이상의 정보가 기재되어 확인된 경우 각 1명으로 집계한다.
 2. 참관객은 전시회 기간 동안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1명당 1회만 집계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참관객 수에서 제외된다.
1. 참가업체의 직원
 2. 전시회 운영을 위해 고용된 자
 3.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의 관계자
 4. 전시회 운영을 위해 방문한 전시디자인설치업자 및 전시서비스업자
 5. 그밖에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참관객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객
- ⑤ 참관객 수와 별도로 전시회 방문 수를 집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방문 수는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한 수를 뜻하고 하루에 한번만 집계된다.
 2. 참관객 수와 참관객의 반복 방문수를 합계하여 총 방문수를 집계할 수 있다.
- ⑥ 전시회의 특성상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장료 판매수량, 온라인과 모바일 사전예매 수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참관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수치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수치가 아님을 별도로 명기한다.

- ⑦ 합동전시회의 경우, 총 참관객 수는 합동전시회를 구성하는 개별 전시회의 참관객 수의 총합이 아닌, 참관객 수가 최다인 개별전시회의 수가 전체 참관객 수로 인정된다.

제20조 (현장검증) ① 인증(검증)기관은 [별표4]에 따라 전시면적, 참가업체의 참가여부, 등록절차 이행상황 등을 확인한다.

- ② 그 외 인증(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현장검증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정보보고) ① 등록시스템 운영업체는 전시회 개막과 동시에 매일 집계 정보를 성명별(가나다 순)로 정리된 등록정보 파일을 인증기관에 제출하며, 별도 등록시스템 운영업체가 없을 경우 인증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 ②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신청기관을 통하지 않고 등록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직접 참관객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시스템 운영업체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③ 전시회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은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1. 전시회 정보 보고서
2.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시회 정보 세부내역(참가업체 및 참관객 정보 세부내역)
4. (필요시) 참가업체 신청서(임차면적 명시) 사본
5. (필요시) 참가업체 참가비 납입증명 서류(선수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납입영수증) 사본
6. (필요시) 전시장 임차료 납입증명 서류(선수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납입영수증) 사본
7. 기타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자료 등

- ④ 전시회 정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시회 인증이 완료되기 전에 인증기관에 보고 후 변경한다.

- ⑤ 규정된 기일 내에 전시회 정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2항에 따

라 인증업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인증심사비는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정보관리) 인증기관은 전시회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와 전시회의 정보,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현장검증을 위해 사용된 부스 도면 등의 전시회 인증관련 자료는 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최대 5년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인증기관에서 보관여부를 결정한다. 단, 참관객 수 검증을 위한 참관객 리스트 정보의 경우 제9조(개인정보의 관리)에 따라 인증 완료시에 즉시 삭제한다.

제 4 절 인증자격 부여

제23조 (인증자격) ① 검증을 완료한 전시회에 대해 인증 전시회 자격을 부여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전시회의 경우 국제인증 전시회 자격을 부여한다.

1. 개최실적(일반정보,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등)을 검증받은 전시회의 경우, 인증 전시회 자격을 부여한다.

2. 최소 2회 이상의 개최실적이 있는 인증 신청 전시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키면 국제인증 전시회 자격을 부여한다.

가. 해외 참가업체 수가 총 참가업체 수의 10% 이상

나. 해외 참관객 수가 총 참관객 수의 5% 이상

제24조 (인증결과 확정) ① 인증결과는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자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분기별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구성·개최한다.

제25조 (인증서 발급) ①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인증자격 부여가 확정된 전시회의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전시회 인증서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다.

- ② 단,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서 발급 전 인증예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마크) ① 인증 전시회 또는 국제인증 전시회의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전시회의 인증마크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제27조 (인증결과 보고서 제작 및 발행) 인증기관은 전시회 인증서를 발급한 실적을 인증결과 보고서로 제작하여 매년 5월에 발행한다.

제 5 절 인증 유효기간 및 취소

제28조 (인증 유효기간) 인증자격은 전시회 인증을 신청한 회차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회차 전시회가 개최되는 년도 말일까지 유효하다.

제29조 (인증 취소) ① 인증자격이 부여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인증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심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 전시회 인증과 관련하여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신청기관이 인증 취소 의사를 인증기관에 밝힌 경우

제 6 절 이의신청

제30조 (이의신청 방법과 결정) ①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기관은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인증결과가 확정된 후 1달 이내로 한다.

- ② 인증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표2]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인 증 심 사 비

제31조 (인증심사비) ① 인증신청 전시회의 정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비용은 전시장 임차 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단, 합동전시회의 경우 구성 전시회(합동전시회를 구성하는 개별 전시회)가 2개 초과일 때는 추가 1개 전시회당 100만원 추가 청구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비는 할인 적용된다.

1. 동일한 신청기관에서 3개 이상의 전시회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시 3번째 전시회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할인 적용된다. (중복 적용 가능)
2. 동일한 전시회가 연속 3회 이상 인증 신청시 아래의 표와 같이 할인 적용되며 이는 격년 개최되는 전시회에도 동일 적용된다. (중복 적용 가능)
3.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전시회의 경우 5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중복 적용 불가)

<면적 및 신청전시회 수에 따른 인증심사비>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총 전시 면적(m^2)	$10,000m^2$ 미만	$10,000m^2 \sim$ $20,000m^2$ 미만	$20,000m^2 \sim$ $30,000m^2$ 미만	$30,000m^2 \sim$ $50,000m^2$ 미만	$50,000m^2$ 이상
인 증 비	3,600	4,000	4,400	4,800	5,200
3회째 신청시	3,240	3,600	3,960	4,320	4,680
신청기관 2개 초과시	2,880	3,200	3,520	3,840	4,160

* 각 단계별 할인율은 10%임

③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의해 (계산)된 비용에 아래의 표에 따라 정한다.

권역구분	아시아, 오세아니아권	아시아, 오세아니아권 이외 지역
비용구분	1.5배	2배

④ 인증심사비는 전시회 개최 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전시회의 신청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인증심사비를 대납할 수 있으나 신청기관에서 별도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사비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32조 (인증심사비 환불) 신청기관이 인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기 납부한 인증심사비의 환불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인증심사비 환불 비율>

구분	환불 비율
전시회 개최 전	100%
인증절차 진행 중 (전시회 현장실사 이후)	50%
인증절차 종료 후 (인증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0%

제33조 (인증심사비 청구) 신청기관에서 전시회 개최 전,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증기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인증신청의사를 밝히고 현장검증을 요청하여 인증기관에서 현장검증을 완료한 후 인증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에 현장검증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매해 발표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제2호와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서 연구원 기준을 준용하여 현장검증 일자에 비례하여 청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마크

구분	인증 전시회	국제 인증 전시회
국 문		
영 문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회 인증제도의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인증 결과를 최종 심사, 의결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진흥회 상근부회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흥회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4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전시산업 유관기관에서 전시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진흥회가 구성한다. 전문가로 구성하며, 인증을 신청한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기존 위원이 보직변경, 일정 불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할 경우 진흥회에서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진흥회는 안전 발생 시 간사를 통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전시회의 인증자격 여부,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수정, 기타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진흥회 제수당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기록 관리) 진흥회는 위원들의 결의서와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내용을 회의록과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한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1. 전시회 참관객 검증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등록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항목은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를 참조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진흥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전시회 참관객 리스트	- 정보주체의 동의 - 신청기관의 동의	성명, 이메일,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소속기관	전시회 정보 검증 완료 시 즉시 삭제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진흥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1. 진흥회는 전시회 인증의 목적으로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각 해에 선정된 검증기관에 제공하며 검증 완료 시 즉시 삭제한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진흥회는 인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검증기관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② 진흥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진흥회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진흥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진흥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

진흥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진흥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한다. 또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한다.

2. 파기방법

진흥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구 삭제하여 파기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권혁
- 직책 : 사원
- 연락처 : 02-574-2049, hkwon@akei.or.kr, 02-574-2696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시지원팀

- 담당자 : 박희승
- 연락처 : 02-574-2019, phs@akei.or.kr, 02-574-2696

② 정보주체는 진흥회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진흥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한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아래의 기관은 진흥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진흥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6. 27부터 적용됩니다.

전시회 정보 검증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시주최사업자에 의해 작성된 전시회 정보 보고 자료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회 정보 보고자료 검증의 준수) 검증인은 전시회 정보 보고자료 검증(이하 “검증” 라 한다)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의 중요성과 위험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의 목적) 검증은 전시회 전시주최사업자가 보고한 검증대상 전시회의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및 세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증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전시회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시회 정보의 이용자가 전시회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기준” 이라 함은 인증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기준’ 을 뜻한다.
2. “검증인” 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지정에 의해 특정 전시회에 대한 검증 업무 수행책임을 맡게 된 회계기관을 뜻한다.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일 반 기 준

제5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검증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증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6조 (검증인의 적격성) 검증인은 검증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를 연마하여야 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독립성) ① 검증인은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의 정신을 견지하여야 한다.

② 검증인은 외관상으로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신의성실) ① 검증인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인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검증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실 시 기 준

제9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검증인이 검증의견의 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검증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10조 (검증계약) ① 검증인은 인증기관과 검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검증의 목적과 범위, 검증인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검증인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검증위험) ① 검증인은 검증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시회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위험(이하 “검증위험”이라 한다)을 고려하고, 이를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증인은 검증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검증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위험의 평가에 필요한 중요성 기준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검증인은 검증위험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정과 오류) 검증인은 검증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전시회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증증거) 검증인은 전시회 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검증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증절차) ① 검증인은 검증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검증절차는 일반검증절차와 기타의 검증절차로 구분한다.

③ 검증절차는 일반적으로 표본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나, 필요시에는 전수조사를 겸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일반검증절차) 일반검증절차는 검증인이 일반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검증절차를 말하며,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이전 단계

(1) 전시회에 대한 이해 및 예비적 평가

① 전시회에 대한 제반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여 전반적인 검증위험에 관한 예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시회 전시주최사업자 및 등록시스템 운영업체와의 회의를 통해 등록절차 및 검증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한다.

(2) 검증계획의 수립

전시회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검증위험에 관한 예비적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2. 전시회 개최 기간 단계

(1) 전시규모, 참가업체의 참가여부, 등록절차 이행상황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2) 참관객에 대한 시험 카운트(Test-counts)를 실시할 수 있다.

(3) 필요시에는 전시장 출입구에 검증인 또는 검증보조자를 배치하여 참관객 수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시회 종료 후 단계

(1) 입증절차

전시회 인증기준을 적용한 자료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검증절차를 실시한다.

(2) 분석절차

주요 항목과 비율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다.

제16조 (기타의 검증절차) 기타의 검증절차는 일반검증절차 이외에 검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택 적용하는 검증절차로 한다.

제17조 (표본검증) 참관객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참관객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적용한다.

제18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검증) 전시회의 관련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검증절차를 적용한다.

제19조 (검증업무의 관리) ① 검증인은 검증계약부터 검증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검증인은 전시회 자료에 대한 검증의견이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 ③ 검증조서는 검증인의 소유이며 검증 종료 후 상당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정권고) 검증인은 검증수행과정에서 자료의 수정을 요하는 주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시회 전시주최사업자가 전시회 정보 보고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고 기 준

제21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검증인이 검증을 실시한 후 검증대상 전시회 정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적용한다.

제22조 (검증보고서) ① 검증인은 검증보고서에 수행한 검증의 범위와 검증의견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검증보고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보고서에는 제목, 검증보고서 일자, 수신인 및 검증인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검증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증보고서에는 검증의 범위와 검증의견 및 검증보고서 이용자에게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여 기술한다.

1. 도입문단에는 검증대상 전시회를 명시하고 전시회 개최 담당자와 검증인의 책임한계 등을 기재한다.
2. 범위문단에는 검증인이 준거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지침을 명시하고 그 준수 여부와 검증인이 수행한 검증의 성격에 대해 기술한다.
3. 중간문단(범위문단과 의견문단 사이)에는 검증의견에 영향을 미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술한다.
4. 의견문단에는 전시회 정보 자료가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인의 의견을 표명한다.

5. 특기사항문단(의견문단 다음)에는 검증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검증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술한다.

제23조 (검증의견) ① 검증인이 검증한 전시회 자료에 대하여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 ② 검증인은 예외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증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사항이 전시회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적정의견) 적정의견은 검증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시회 정보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시회 정보가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한다.

제25조 (한정의견) 한정의견은 검증의 실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범위의 제한 또는 제20조 수정권고에 따른 검증인의 중요한 수정사항을 전시회 전시주최사업자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한다.

제26조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검증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전시회 자료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표명한다.

제27조 (기타 전문가의 활용) 검증인은 전시회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 중 일부를 기타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증인은 기타 전문가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과 객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 (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검증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검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 1호 서식] 전시회 인증 신청서(예시)

전시회 인증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 :)		
신청내용	전시회명	(국문)		
		(영문)		
	개최기간	00.00.00 ~ 00.00.00	최초 개최년도	
	개최주기	년	최근 2회 개최년도	
	총 전시면적 (임차 계약서상의 총면적)	㎡	국내업체 임차면적	㎡
			해외업체 임차면적	㎡
	전체 참가업체 수	개사	국내 참가업체 수	개사
			해외 참가업체 수	개사
	전체 참관객 수	명	국내 참관객 수	명
해외 참관객 수			명	
<p>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0조(인증신청)에 따라 전시회 인증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기관 :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근 2회 이상 전시회 개최실적 2. 전시면적(옥내, 옥외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2호 서식] 최근 2회 전시회 개최 실적서

최근 2회 전시회 개최 실적서

I. 전시회명	
---------	--

II. 전시회 개최 결과						
구 분	년도			년도		
개최기간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m ²) (입차 계층위의 총면적)						
입차면적 (m ²)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참가업체 수 (개사)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참관객 수 (바이어 포함) (명)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바이어 수 (명)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인증(검증)기관						

전 시 회 정 보 제 공 동 의 서

1. 인증기관에 검증자료 및 정보보고서를 전시회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1조(정보보고)
2.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전시회 정보 보고를 규정된 기일 내에 미제출하는 등 인증기관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 인증업무를 중단,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6조(신청기관의 업무협조) 및 제21조(정보보고)
3. 인증 철회 시 기간에 따라 인증심사비의 일부를 환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2조(인증심사비 환불)
4. 기타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전시회 정보 보고서

전시회 정보 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		
보고내용	전시회명	(국문) (영문)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면적	총전시면적	특별전시면적	임차면적				
				소계	옥내		옥외	
					국내업체	해외업체	국내업체	해외업체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참가업체 수	총 참가업체 수		국내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개사		개사		개사		
	참관객 수	총 참관객 수	바이어(구매자)			일반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명			명	명	명	명	명	
<p>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전시회 정보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관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귀하</p>								
첨부서류	1. 참가업체 및 참관객 정보 세부내역(붙임자료) 2.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총전시면적 : 임차 계약서상의 총면적

*특별전시면적 : 전시주최사업자가 설치한 전시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대행사 면적

[붙임] 참가업체 및 참관객 정보 세부내역

1. 참가업체 세부내역(엑셀파일)

구분 ¹⁾	참가업체명	부스구분	국가명	부스수	부스번호
국내직접/간접	가나다	독립	한국	1	A101
해외직접/간접	ABC	조립	미국	2	B101
:	:	:	:	:	:

※ 국내, 해외, 해외 간접참가 순으로 정렬 요망

1) 해외 직접 : 해외 직접 참가

해외 간접 : 참가기업의 소재지는 국내이나 참가기업이 다국적기업(ex, IBM) 이거나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의 자회사, 지점, 지사인 경우

2. 참관객 세부내역(엑셀파일)

국내/ 해외	바이어/ 일반	이름	회사명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국가	지역	주소	관심분야
:	:	:	:	:	:	:	:	:	:	:

※ 연락처(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이메일)가 누락되었을 경우 집계되지 않음

※ 회사명이 누락되었을 경우 (국내/해외)바이어가 아닌 (국내/해외)일반으로 인정

3. 참관객 분류현황

가. 국내 지역별 분류

지역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대전/충청	강원도	제주도	합계
비율(%)									100

나. 해외 지역별 분류

지역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비율(%)								100

다. 업종분류(세부구분 변경 가능)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제 조		금융/투자	
무 역		대학/연구/교육기관	
유 통		언론/출판기관	
정부/공공기관		기 타	
비즈니스 서비스		합 계	

라. 직위분류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대표이사		사원 · 주임급	
임원급		기술직/전문직/프리랜서	
차장 · 부장급 · 팀장		강사/교사/연구(보조)원	
대리 · 과장급		합 계	

마. 담당부서(세부구분 변경 가능)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경영/관리/기획/재무		영업/ 마케팅/PR	
구매/조달/물류		리서치(연구)/개발/디자인	
제조/생산/품질관리		ICT	
		합 계	

제 0000-0-0호



전시회 인증서

Certified Exhibition

전시회명 :	Title :
주최기관 :	Organizer :
개최기간 :	Date :
개최장소 :	Venue :
인증구분 : 국제인증전시회	Certificate Type : Int'l Certified Exhibition
유효기간 : 0000. 1. 1 ~ 12. 31	Validity date : Jan 1 st ~ Dec 31 st , 0000

위 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한 국제인증 전시회임을 확인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exhibition mentioned above is an
Int'l Certified Exhibition by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AKEI)
In accordance with Clause 23 in Exhibition Certification Regulations and Rules.*

0000년 00월 00일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 0000-0-0호



전시회 인증서

Certified Exhibition

전시회명 :	<i>Title :</i>
주최기관 :	<i>Organizer :</i>
개최기간 :	<i>Date :</i>
개최장소 :	<i>Venue :</i>
인증구분 : 인증전시회	<i>Certificate Type : Certified Exhibition</i>
유효기간 : 0000. 1. 1 ~ 12. 31	<i>Validity date : Jan 1st ~ Dec 31st, 0000</i>

위 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한 인증 전시회임을 확인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exhibition mentioned above is an
Certified Exhibition by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AKEI)
In accordance with Clause 23 in Exhibition Certification Regulations and Rules.*

0000년 00월 00일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신청기관명

수신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경 유) 전시지원팀 인증담당자
제 목 ○○○전시회 인증 이의신청

1. 귀 진흥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시회 인증과 관련, 전시회 인증규정 제30조(이의신청 방법과 결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시회 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하오니 접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한 전시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전시회명 :

나. 전시기간 :

다. 전시장소 :

라. 신청기관 :

.끝.

신청기관장 직인